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464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종교단체 B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구합853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2

1. 이 사건 처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이의신청을 거쳐 … 하였으나" 부분을 "[redacted]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6. 11. 25.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2016.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2015. 5. 2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은 잘못된 송달 장소에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2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우편물의 송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우편물 기타 서류를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경우 그 제3자가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기우편 송달조회에 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수신자를 원고로 하여 발송되었고, 이를 2015. 5. 20. 회사동료인 F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대표인 K은 원고의 주소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G에서 사회복지법인 H을 운영하고 있고 F은 사회복지법인 H의 직원인 사실, F은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사회복지법인 H의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G에서 사회복지법인 H의 우편물과 함께 송달받았고 당시 원고의 대표와 사회복지법인 H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으며 그 이전에 원고의 우편물을 대신 송달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2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5. 20.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F이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그가 원고로부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2015. 5. 2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5) 그렇다면 원고가 2015. 8. 31.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라 함은 '매각·증여로 인해 더 이상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종교 목적 단체인 C종교단체 D사에 증여했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2

한 소유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5. 9.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2013. 6. 28. C종교단체 D사에 증여한 이상,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유는 증여자인 원고에 대한 추징면제 사유가 아니라 수증자 자신의 취득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2

판사 송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2

과세내역표

(단위: 원)

순번	과세 부동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	[redacted]도 [redacted]군 J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평지붕 단층 종교시설 지하 2층 1196.07㎡, 지하 1층 730.43㎡,1층 608.37㎡, 옥탑1층 41.11㎡	77,494,200	4,110,930	4,742,040	86,347,170
2	[redacted]도 [redacted]군 J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종교시설 106.17㎡	1,988,660	105,480	121,680	2,215,820
3	[redacted]도 [redacted]군 J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종교시설 81㎡	1,517,190	80,480	92,830	1,690,500

- 끝 -